

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6일
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2. 제정이유

-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“사회복지사 등”에 대한 용어의 뜻 정비(안 제2조)
- 광범위한 종합계획 구성요소 정비(안 제6조제1항)
- 실태조사 근거규정 오기 정정 및 공포절차 신설(안 제7조)
- 처우개선위원회 의무화 및 일부 문구 정비(안 제10조)
- 군이 제공하는 공공시설 편의내용 구체화(안 제12조)

4. 의견 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의회

- 전 화 : 043)740-3089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(다음부터”를 “(이하”로 한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(다음부터”를 “(이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(다음부터”를 “(이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(다음부터”를 “(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3조제3항”을 “법 제3조제4항”으로, “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”를 “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관련기관 등”을 “사회복지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위원회 설치)”를 “(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회복지사 등의”를 “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”로, “지위향 상”을 “지위향상”으로, “심의·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

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(다음부터)를 “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(이하)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행한다”를 “심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계획”을 “종합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”을 “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3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에 관한 사항

4.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
제12조 중 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감면 등”을 “영동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출입·이용 및 이용료 감면 등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(다음부터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영동군(다음부터 “군”이라 한다)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
2. ~ 5. (생략)

제7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위원회 설치)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

-----.

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.

<삭 제>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실태조사) ① ----- 법 제3조
제4항-----

-----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
결과를 공표하여야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사회
복지기관 -----
-----.

제10조(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법

향 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
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(다
음부터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
있다.

② (생 략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수행한다.

1.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
항

2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

4.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
인권에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
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편의제공) 사회복지사 등은
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군이 운영하
는 공공시설의 감면 등 편의를 제
공받을 수 있다.

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
--- 지위향상-----
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
(이하 ----- 둔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심의한다.

1. 종합계획-----

2.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-----

3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
인권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4.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
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
5. ----- 등의 처우개
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
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
에 부치는 ---

제12조(편의제공) -----
----- 영동군이
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출입·이용
및 이용료 감면 등의 -----
-----.